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국장
람	

제1435호 2019. 5. 3(금)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1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1.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

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 대하여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해야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 ⑤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잰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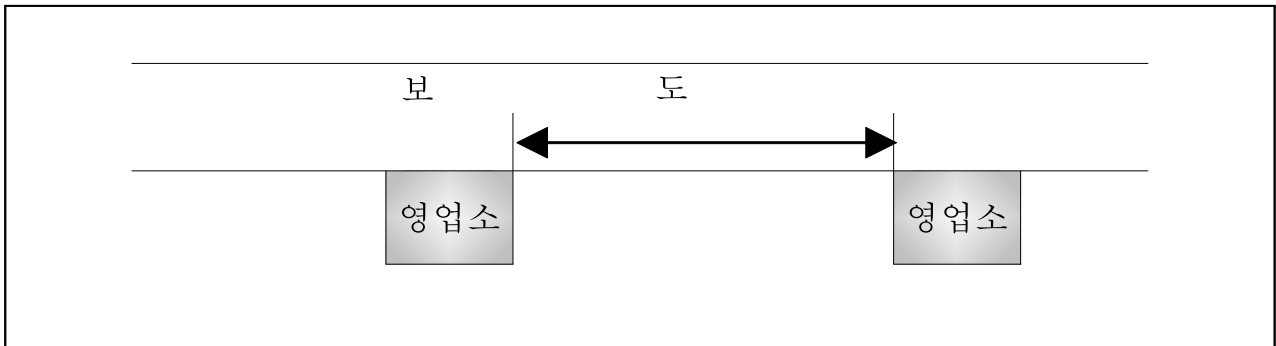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제5조 관련)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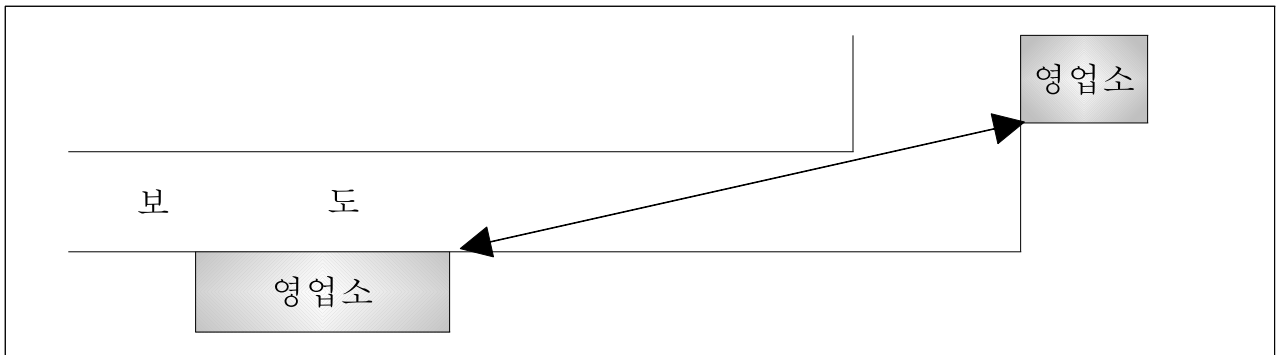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물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1층 출입구(영업소와 최단거리)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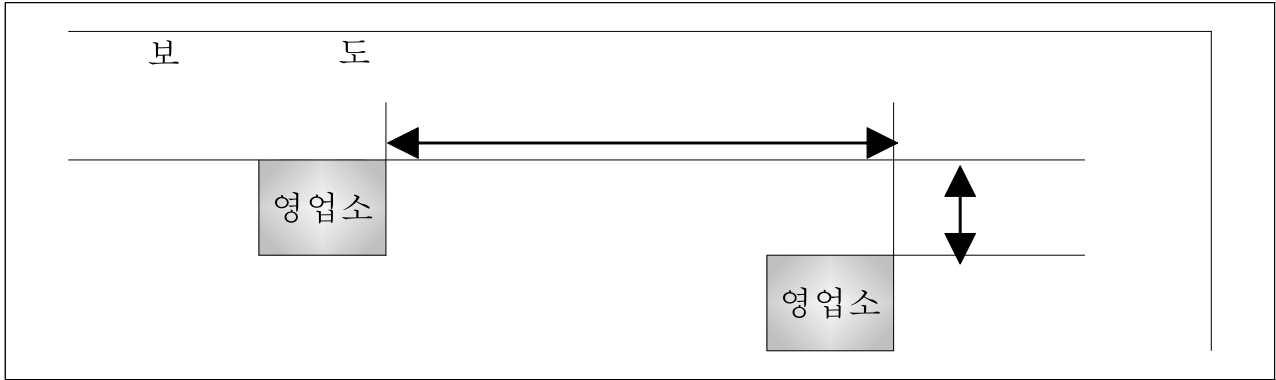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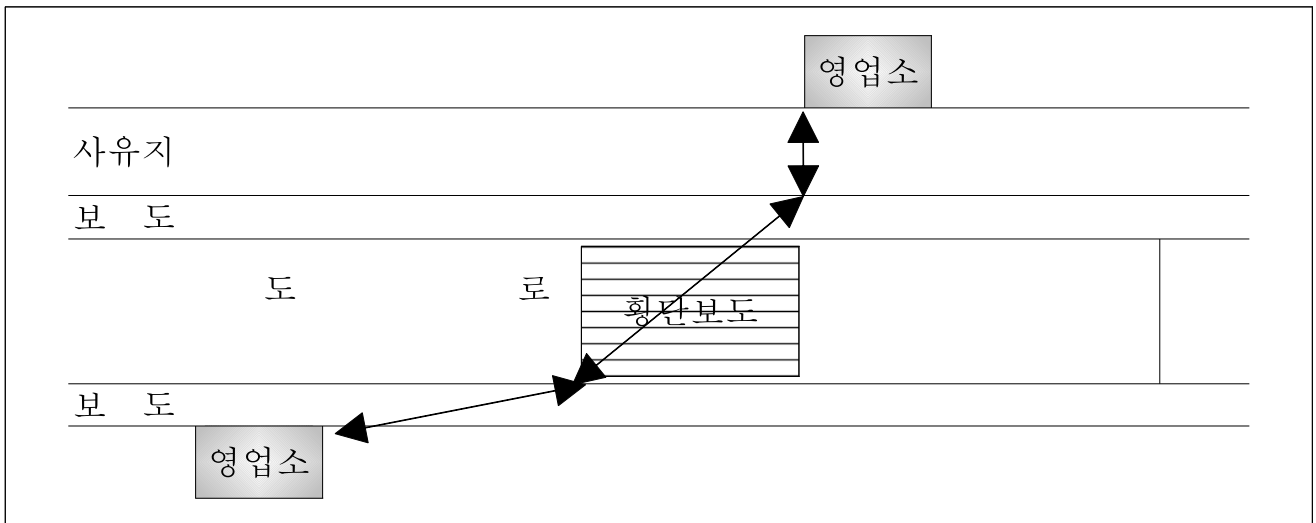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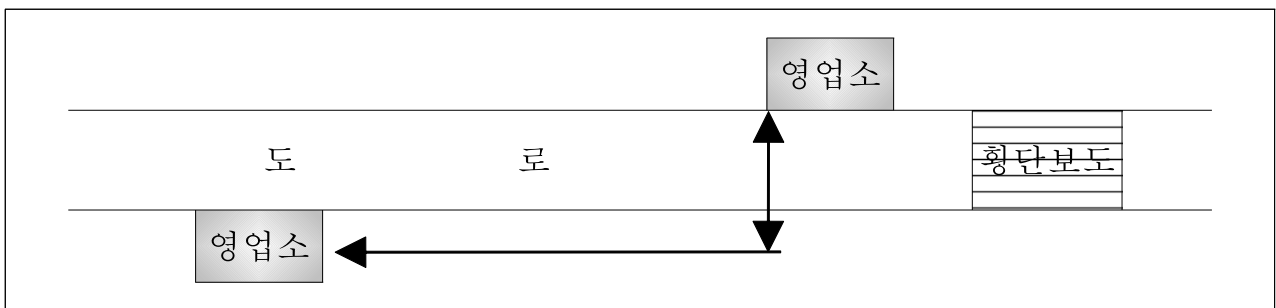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4)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